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4. 17 선고 2018가단1477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19. 4. 3.

판결 선고2019. 4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1. 7. 24. 접수 제307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는 1991. 7. 24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1. 7. 24. 접수 제30756호로 채권최고액 9,100,000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F으로 하여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F은 2017. 12. 10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.

[인정근거] 갑 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1991. 12. 20.경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변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

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되고,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·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F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1. 7. 24.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.

그렇다면, F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김경수

별지